

한변, 등 대리하여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4.3추념사로 인한 위자료 및 명예회복조치 청구소송 제기 - 4.3 왜곡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추념사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

일시 : 2021. 8. 18(수) 10:30 기자회견

장소 : 서문 장미아치 앞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남로당 무장공비의 습격을 받아 무참히 살해된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로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8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3추념사에서 제헌국회의원 선거방해와 대한민국 건국저지를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무장대를 군경이 진압한 사실을 가리켜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을 꿈꿨다는 이유로 국가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발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경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스탈린이 1945. 9. 20. 이북지역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 한 이북지역 단독 정부 수립 지시, 소련군 사령부의 1945. 10. 북조선5도 행정국 설치, 1946. 2. 8.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구성, 1946. 3. 23. 헌법의 성격을 가진 ‘북조선임시위원회 20개 정강’ 발표, 1947. 2. 22. 김일성을 수반으로 한 사실상의 정부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설립 등 이북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 11. 14. 유엔총회는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소련과 김일성은 이를 극구 반대하면서 유엔 선거감시단의 입북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은 1948. 2. 26. 우선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48. 5. 10.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치르고 헌법을 제정한 후 1948. 8. 15.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3. 이와 같은 해방정국의 정세하에서, 당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후의 역사가 증명한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을 뚫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의 선택은 탁월하고 정당한 것이었으며,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통성도 갖춘 것이었다.

, 남로당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하며 한반도에 공산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장유격대를 조직, 동원하여, ‘단선·단정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기습공격하고 살육과 방화를 저지르는 무장폭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결정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군경이 이러한 공산무장폭동을 진압한 것은 국가보위를 위한 당연하고 정당한 직무행위이지 결코 폭력이 될 수 없다.

4.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20. 4. 3.과 2021. 4. 3.에 한 4.3희생자추념식 추념사에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였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를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덧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권력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지난 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다.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제헌국회의원선거 방해행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한 행위, 군경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살인행위, 경찰지서 습격 등 무장폭동행위가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찬성하고 이를 추진한 사람들을 반통일 분자, 반평화주의자, 반독립주의자 등으로 몰아부침과 동시에,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군과 경찰을 모독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군과 경찰의 충수를 출석시켜 치욕적인 사죄를 하게 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은 분단을 만들고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여 분단반대와 조국통일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세우지 말아야 할 나라를 세워 민족을 분단시킨 원흉이요 집단살인범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승만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다.

5.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발언은, 대한민국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이며, 나아가 공산통일을 꿈꾸는 남로당 공산세력의 꿈이 ‘분단을 반대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꾸 꿈’이요 ‘못 이룬 꿈’이요 ‘내일 이루어야 할 꿈’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반국가적인 폭동을 진압한 군경들을 향하여 ‘국가의 폭력’, ‘생명유린’ 등의 망언을 하였는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와 같은 발언의 위법성의 정도는 심대하다 할 것이다.

6. 문재인 대통령의 위 발언을 통하여 이승만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이승만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관련 사업을 하는 기념사업회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또한, 4.3사건 당시 공산무장공비에 의하여 피살된 경찰관의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 할 것이다.

위자료 일부 청구로서 우선 각 1,000만원을 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당한 조치로서, “성명서-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대국민 성명서를 최소한 3개 이상의 신문과 3개 이상의 방송을 통하여 발표할 것을 청구하였다.

- (1). 본인은, “제주 4.3사건은 1948년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당원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공산세력 등이 제헌국회의원 선거 및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공산통일정부 수립을 획책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일으킨 무장폭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2). 그리고, 이러한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을 대한민국 군·경이 진압한 행위는 국가보위를 위한 방위권의 행사로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고,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를 진압한 행위를 가리켜 “통일정부수립이라는 민족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국가폭력 행위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3). 또한, “이승만 정부가 분단을 거부하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항쟁을 집단학살로써 진압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과 “4.3사건 당시 국회의원 선거, 정부수립 등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폭동을 벌인 남로당 무장대를 비롯한 공산세력들이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위한 꿈을 먼저 쫓은 사람들로서 처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 이용우(한변 고문), 김태훈(한변 회장) 변호사와 함께 소송대리를 맡은 구충서 변호사는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인 피고의 대국민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이 정당하고,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 따른 정통성을 가진 국가이며,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과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남한을 지켜낸 위대한 업적이고, 제주4.3사건은 이러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공산국가 수립을 획책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공산무장유격대를 우리 군경이 진압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밝혔다.

2021. 8. 17.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신철식